산업통상자원부	**보도참고자료**	http://www.motie.go.kr

2018년 6월 29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6.28(목) 오전 11시부터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8.6.28(목) 8:00	담당부서	전기통신제품안전과 생활제품안전과
담당과장	김재은 과장 (043-870-5340) 김용태 과장 (043-870-5450)	담 당 자	김창용 연구관 (043-870-5445) 박해범 사무관 (043-870-5447) 김지훈 사무관 (043-870-5455)

개정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7월1일 시행

-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은 제품시험, KC마크 표시 면제 -
- 일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KC마크 없이도 구매대행 가능 -
- 병행수입제품은 기(旣) 인증제품과 같은 모델일 경우 인증 면제 -

□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(원장 허남용)은 지난 해 12월 30일 공포된 개정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(이하 전안법)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.

○ 국가기술표준원은 법 개정 이후 소상공인연합회, 중소기업중앙회, 온라인쇼핑협회 등과 협력하여 간담회, 설명회 등을 20여 차례 개최하여 개정 전안법의 주요 내용을 업계에 설명하였다.

* 18.1~6월 설명회 : 소상공인(1.25 동대문시장), 섬유업계(1.26 서울, 3.21 대구, 4.24 부산), 중소기업(2.7, 5.17), 구매대행업계(5.25), 병행수입업계(6.8) 등

○ 또한 좌담회 개최 (5.28),「전안법 가이드북」발간 (6.1, 오프라인 4천부 배포)에 이어, 동대문시장에서 상인들을 직접 만나 캠페인 (6.20)을 실시하는 등 바뀌는 제도를 업계에 정확히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.

□ 개정 전안법은 의류, 장신구등 소상공인의 인증 부담을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원자재 안전성 확보, 사업자의 고지의무 신설 등 보완조치를 통해 소비자 안전에도 차질이 없도록 마련되었으며,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(1)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신설

○ 기존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(37개 품목) 중에서 사고 또는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의류, 가죽제품 등 23개 품목을 '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'으로 지정하였다. (붙임1 참고)

○ 이들 품목에 대해서 사업자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·수입해야 하지만, 안전성검증을 위한 제품시험, KC마크 표시, 인터넷 판매시 안전 관련 정보 게시 등 의무는 없어졌다.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○ KC마크 표시 의무가 없어짐에 따라 제조자는 KC마크 표시를 하지 않아야 하며, 판매자는 제조국, 제조시기 등 해당 품목의 안전기준에서 정한 표시사항이 부착된 제품을 판매해야 한다.

(2) KC마크 표시가 없더라도 일부 품목은 구매대행 가능

○ 과거 안전관리대상 품목(총 250개)은 모두 KC마크가 붙어 있어야만 구매대행이 가능했지만, 앞으로 215개 품목은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가 붙어 있지 않더라도 구매를 대행할 수 있다.

* 구매대행 : 개인 사용을 위해 소비자 요청에 따라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하여 주문, 대금지급 등 절차를 대행하여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도록 하는 방식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 (법 제2조제16호)

○ 나머지 35개 품목은 KC마크가 없으면 구매대행이 불가능하다.
(세부내용 붙임3, 붙임4 참고)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8-07-05 17:23:04

○ 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구매를 대행하는 경우 제품별로 법령이 정한 다음 고지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.

- KC마크 표시가 없는 경우 : ① 구매대행을 통해 유통되는 제품임 ② 전안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

- KC마크 표시가 있는 경우 : ① 구매대행을 통해 유통되는 제품임 ② 전안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③ KC마크 ④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

○ 구매대행한 제품 또는 구매대행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해당 제품 구매대행을 중지해야 한다.

(3) 병행수입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·안전확인신고·공급자적합성확인 면제

○ 정식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확인 신고한 제품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고자 하는 병행수입업자는 안전인증,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.

* 병행수입 : 해외상표권자에 의해 생산·유통되는 제품을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(법 제2조제17호)

○ 병행수입 제품에 대한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,

-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대상은 정식 수입업자가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신고한 제품의 사진과 병행수입하려는 제품의 사진*을 시험인증기관에 제출하여 동일 모델임을 확인 받아야 하며,

-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은 정식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제품의 사진과 병행수입하려는 제품의 사진*을 통해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. (단, 전기용품의 경우 한국제품안전협회에 신고 필요)

* 전기용품 : 제품 전면, 후면, 플러그, 전원부 부품 사진
* 생활용품 : 제품 전체를 보여주는 사진

○ 면제를 받았을 경우 병행수입업자는 제품 또는 포장에 다음 사항*을 표시해야 하며, 인터넷을 통해 병행수입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
* ① 병행수입을 통해 유통되는 제품임 ② 전안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(4)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의무 유예기간 만료

○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14개 품목(붙임2 참고)에 대해서 6.30일까지 시행이 유예된 다음 의무를 7.1일부터는 이행해야 한다.

* ① 안전성을 입증하는 시험성적서 보관 의무 ② 인터넷 판매시 안전 관련 정보 (KC마크, 제품명, 모델명,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) 게시 의무

□ 국가기술표준원은 개정법 시행으로 인한 업계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에서 하반기를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, 올해 말까지 단속보다는 새로운 제도를 알리는데 노력하여 개정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8-07-05 17:23:04

○ 개정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을 경우 6.1일에 발간·배포된 「전안법 가이드북」을 참고하면 된다.

* 산업통상자원부, 국가기술표준원, 제품안전정보센터, 중소기업중앙회, 섬유산업연합회, 의류산업협회 등 홈페이지 참고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김창용 연구관(☎ 043-870-5445), 박해범 사무관(☎ 043-870-5447), 생활제품안전과 김지훈 사무관(☎ 043-870-545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(23개 품목)

구 분	분 야	안전관리대상 품목	
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(23)	화학(2)	• 가죽제품	① 가죽제품
		• 화장비누	① 화장비누
		• 가구(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넷은 제외)	① 책상 및 테이블 ② 의자 ③ 수납 가구 ④ 침대 ⑤ 씽크대 ⑥ 소파 ⑦ 기타 가구류
		• 간이 빨래걸이	① 간이 빨래걸이
		• 선글라스	① 선글라스
		• 안경테	① 안경테
		• 텐트	① 텐트 ② 난방용 텐트
		• 고령자용 신발	① 고령자용 고무신발 ② 고령자용 염화비닐신발 ③ 고령자용 가죽신발 ④ 고령자용 발포신발
		• 고령자용 지팡이	① 고령자용 일자형지팡이 ② 고령자용 조절식지팡이 ③ 고령자용 접이식지팡이 ④ 고령자용 조립식지팡이 ⑤ 고령자용 다족지팡이 ⑥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
		• 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	① 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
		• 고령자용 목욕의자	① 고령자용 목욕의자
		• 고령자 위치추적기	① 고령자 위치추적기
		• 물안경	① 물안경
		• 반사 안전조끼	① 반사 안전조끼
		• 스테인레스 수세미	① 스테인레스 수세미
		• 시각장애인용 지팡이	① 시각장애인용 일자형지팡이 ② 시각장애인용 접이식지팡이 ③ 시각장애인용 안테나형지팡이 ④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
		• 침대 매트리스	① 침대 매트리스
		• 우산 및 양산	① 우산 ② 양산 ③ 우산 겸용 양산
		• 휴대용 경보기	① 휴대용 경보기
		• 접촉성 금속 장신구	① 접촉성 금속 장신구 (반지, 목걸이, 팔찌, 장식용 체인, 귀고리, 펜던트, 발찌, 손톱장식품, 피어싱, 배꼽지, 손목시계, 시계줄, 머리장식품 등)
		• 벽지 및 종이장판지(인테리어 필름을 포함)	① 벽지 ② 종이장판지
	섬유(2)	• 가정용 섬유제품	① 의류 ② 의류 이외의 섬유제품
		• 양탄자	① 양탄자

try of Trade,
try and Economy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8-07-05 17:23:04

붙임 2 공급자확인대상 생활용품 (14개 품목)

구 분	분 야	안전관리대상 품목	
공급자 적합성확인 (14)	화학(1)	• 폴리염화비닐관(연질염화비닐호스를 포함)	① 연질염화비닐호스 ② 폴리염화비닐관
	생활(11)	• 롤러스케이트	① 롤러스케이트
		• 바퀴 달린 운동화	① 바퀴 달린 운동화
		• 모터 달린 보드	① 모터 달린 보드
		• 창문 블라인드	① 창문 블라인드
		• 쌍꺼풀용 테이프	① 쌍꺼풀용 테이프
		• 속눈썹 열 성형기	① 속눈썹 열 성형기
		• 가(假) 속눈썹(인조속눈썹)	① 가(假) 속눈썹(인조속눈썹)
		• 쇼핑카트	① 쇼핑카트
		• 휴대용 사다리	① 주택용 사다리 ② 도배용 사다리 ③ 원예용 사다리
		• 인라인롤러스케이트	① 인라인롤러스케이트
		• 킥보드	① 킥보드
		• 가구 일부(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넷)	① 가구 일부(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넷)
	기계금속(1)	• 자동차용 휴대용 잭	① 자동차용 유압식 휴대용잭 ② 자동차용 나사식 휴대용잭
	건축(1)	• 물탱크	① 물탱크

붙임 3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

구 분	분 야		안전관리대상 품목	
안전인증 대상 (27개 품목)	전기용품 (25개 품목)	절연변압기	•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	① 전압조정기 ② 가정용 소형변압기 ③ 교류어댑터
				비고: 정격용량 5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,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안전인증대상에서 제외한다.
		전기기기	• 전기청소기	① 진공청소기 ② 물흡입청소기 ③ 전기바닥청소기 ④ 전기표면세척기 ⑤ 스팀청소기 ⑥ 스팀해빙기 ⑦ 고압세척기(정격입력 3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)
				비고: 교류전원 30V 이하,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에 해당된다.
			•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	① 전기다리미 ② 스팀다리미 ③ 바지 프레스기 ④ 주름펴기 ⑤ 다림질 프레스
			• 주방용 전열기구	① 전기레인지 ② 전기오븐기기 ③ 전기거치식그릴 ④ 전기호브 ⑤ 전기곤로 ⑥ 전기가열기 ⑦ 전기토스터 ⑧ 전기프라이팬 ⑨ 전기휴대형그릴 ⑩ 전기고기구이기 ⑪ 와플기기 ⑫ 핫플레이트
			•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	① 전기세탁기 ② 전기탈수기
			• 모발관리기	① 모발건조기 ② 전기머리인두 ③ 모발말개
			•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	① 전기보온기 ② 전기주온기 ③ 전기온장고
				비고: 음식이나 그릇류 등을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
			•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	① 주서 ② 주서믹서기 ③ 후드믹서 ④ 전기녹즙기 ⑤ 크림거품기 ⑥ 계란반죽기 ⑦ 혼합기 ⑧ 버터제조기 ⑨ 압즙기 ⑩ 슬라이스기 ⑪ 전기칼갈이 ⑫ 전기깡통따개 ⑬ 전기칼 ⑭ 커피분쇄기 ⑮ 빙삭기 ⑯ 전기고기갈개 ⑰ 전기국수제조기 ⑱ 전기육절기 ⑲ 전기골절기 ⑳ 기타주방용전동기기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8-07-05 17:23:04

			• 전기액체 가열기기	① 전기밥솥 ② 전기보온밥솥 ③ 전기주전자 ④ 전기냄비 ⑤ 전기물끓이기 ⑥ 전기약탕기 ⑦ 커피메이커 ⑧ 전기스팀쿠커 ⑨ 달걀조리기 ⑩ 우유가열기 ⑪ 젖병가열기 ⑫ 요구르트제조기 ⑬ 증기조리기 등 기타 액체가열기기
			• 전기담요 및 매트	① 전기요 ② 전기매트 ③ 전기카펫 ④ 전기창판
				비고: 교류전원 30V 이하,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. 전기침대는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에 해당된다.
			• 전기온수기	① 전기온수기(끓는 점 이하의 온도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) ② 순간온수기
			• 전기냉장·냉동기기	① 전기냉장·냉동기기 ② 제빙기 ③ 아이스크림프리저 ④ 전기냉수기
				비고: 정격입력이 1.5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. 다만 제빙기는 3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.
			• 전자레인지	① 전자레인지(300MHz ~ 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)
			• 전기건조기	① 회전형 전기건조기 ② 손건조기 ③ 전기건조기
				비고: 손,발,의류,농산물,수산물 등을 건조하는 것에 한정한다.
			• 전열기구	① 전기스토브 ② 전기라디에이터 ③ 전기온풍기 ④ 축열식 전기난방기 ⑤ 전구모양 히터 ⑥ 펠릿 스토브 (전열소자를 이용하여 점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
				비고: 전열보드는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에 해당된다.
			• 전기 마사지기	① 전기마사지기
			• 냉방기	① 냉방기
			• 전기 가열기기	① 납땜인두 ② 납땜제거인두 ③ 권총형납땜기 ④ 열가소성도관용접기 ⑤ 필름접착기 ⑥ 플라스틱절단기 ⑦ 페인트제거기 ⑧ 가열총 ⑨ 전기조각기
			•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	① 전격살충기
				비고: 교류전원 30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.
			• 팬, 레인지후드	① 선풍기 ② 송풍기 ③ 환풍기 ④ 레인지후드 ⑤ 전기냉풍기
				비고: 정격입력이 1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.
			• 화장실용 전기기기	① 자동세정건조식변기 ② 전기변좌 ③ 오물흡입기

			• 가습기	① 가습기
			비고: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, 방폭형인 것은 안전인증대상에서 제외한다.	
		전동공구	•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	① 전기드릴 ② 전기드라이버 ③ 전기그라인더 ④ 포리셔 ⑤ 전기샌더 ⑥ 전기원형톱 ⑦ 전기햄머 ⑧ 전기금속가위 ⑨ 전기테이퍼 ⑩ 전기왕복톱 ⑪ 전기진동기 ⑫ 전기체인톱 ⑬ 전기대패 ⑭ 전기잔디깎이 ⑮ 전기못총 ⑯ 라우터 ⑰ 트리밍기 등 기타 전동공구
				비고: 정격입력이 1.5kW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.
		정보·통신·사무기기	• 직류전원장치	① 직류전원장치
				비고: 1. 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. 기계·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안전인증대상에서 제외한다. 2.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(충전 거치대를 포함한다)는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에 해당된다.
		조명기기	• 안정기 내장형램프	① 안정기내장형램프(안정기내장형 LED램프 제외)
				비고: 안정기내장형 LED램프는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에 해당된다.
	생활용품 (2개 품목)	생활용품	•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	① 가정용 압력냄비 ② 압력솥
			• 물놀이기구	① 공기주입 물놀이기구 ② 공기주입 보우트 ③ 수영 보조용품(착용형) ④ 수영 보조용품(비착용형) ⑤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
안전확인 대상 (80개 품목)	전기용품 (51개 품목)	절연변압기	• 고주파웰더 (고주파용접기)	① 고주파웰더(고주파용접기)
			• 전기용접기	① 전기용접기 ② 권총형아크접착기
			비고: 정격용량 5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, 기계·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안전확인대상에서 제외한다.	
		전기기기	• 과일 껍질깍이	① 과일 껍질깎이
			• 전기 용해기	① 왁스 용해기 ② 초코랫 용해기 ③ 파라핀 용해기
			• 이·미용기기	① 두피모발기 ② 샴푸기기 ③ 모발가습기 ④ 손톱정리기 ⑤ 전기면도기 ⑥ 전기이발기 ⑦ 안면사우나기
			•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	① 전기이발용의자 ② 전동침대 ③ 전기온열의자 ④ 각도조절의자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8-07-05 17:23:04

			• 구강청결기	① 전동칫솔 ② 구강세척기
			• 해충퇴치기	① 해충퇴치기 ② 전기포충기
			• 전기집진기	① 전기집진기
			• 서비스기기	① 전기광택기 ② 수하물보관기 ③ 지폐교환기 ④ 동전교환기
			• 전기에어커튼	① 전기에어커튼
			• 팬코일유닛(fan coil unit)	① 팬코일유닛(fan coil unit)
			• 게임기구	① 레이저사격기기 ② 운전시뮬레이션게임기구 ③ 인형뽑기 ④ 다트판 ⑤ 농구게임기 ⑥ 기타게임기구
				비고: K 또는 KC 60335-2-82에 규정된 개인용 서비스기기 및 상업용 등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하는 것에 한정하며, K 또는 KC 60065 및 60950-1에 규정된 비디오게임용기구는 별표 2의2 제9호 버목(비디오게임기구)을 적용한다.
			•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	① 전기식기세척기 ② 전기식기건조기
				비고: 정격입력이 5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.
			• 전기훈증기	① 전기훈증살충기 ② 전기방향확산기
			• 산소이온 발생기	① 산소이온발생기
			• 전기세척기	① 과일야채세척기 ② 기타 전기세척기 ③ 오존수 발생장치
				비고: 1. 오존수 발생장치는 교류전원 30V 이하, 직류전원 42V 이하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,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. 2. 초음파세척기는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에 해당된다.
			• 전기차 충전기	① 전기차충전기(정격용량이 100kVAh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)
			• 가정용 전동재봉기	① 가정용 전동재봉기
			• 사우나기기	① 전기스팀사우나기기 ② 전기사우나기기 ③ 사우나기기용 전열기 ④ 스팀사우나용 전열기
			•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	① 관상어용·식물용 히터 ② 동물부화·사육용 히터 ③ 관상어용 기포발생기 ④ 관상용전기어항

			•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	① 공기청정기 ② 이온발생기
			• 전기분무기	① 전기분무기
			•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전동기기	① 주서 ② 주서믹서기 ③ 후드믹서 ④ 전기녹즙기 ⑤ 크림거품기 ⑥ 계란반죽기 ⑦ 혼합기 ⑧ 버터제조기 ⑨ 압즙기 ⑩ 슬라이스기 ⑪ 커피분쇄기 ⑫ 빙삭기 ⑬ 기타 주방용 전동기기
				비고: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,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.
			•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,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	① 전기찜질기 ② 발보온기 ③ 전기손난로 ④ 전기방석 ⑤ 온열시트
				비고: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.
			•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	① 전격살충기
				비고: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. 다만, 전지(건전지) 및 2차전지(충전지)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.
			• 자동판매기	① 자동판매기
			• 전기소독기	① 전기소독기
			• 제습기	① 제습기
			• 음식물처리기	① 음식물처리기(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안전확인대상에서 제외한다) ② 주방용 오물분쇄기(하수도법에서 허용한 제품에 한정한다)
			비고: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, 방폭형인 것은 안전확인대상에서 제외한다.	
		오디오·비디오 응용기기	• 텔레비전수상기	① 텔레비전수상기 ②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칠판 ③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테이블
			• 디스크 플레이어	① 디스크플레이어
			• 오디오시스템	① 오디오시스템
			• 전자악기	① 전자악기
			• 오디오프로세서	① 오디오프로세서(오디오 믹서를 포함한다)
			• 영상프로세서	① 영상프로세서
			비고: 기계·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안전확인대상에서 제외한다.	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8-07-05 17:23:04

		정보・통신・사무기기	• 모니터	① 모니터 ② 모니터 내장형 전자칠판 ③ 모니터 내장형 전자테이블
				비고: 교류전원 30V 이하,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,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.
			• 프린터	① 프린터(플로터 및 그래픽 전용인 것은 제외한다)
				비고: 1. 교류전원 30V 이하,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,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. 2. 정격입력 3kW이하인 것에 한정한다.
			• 프로젝터	① 프로젝터
				비고: 교류전원 30V 이하,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,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.
			• 문서세단기	① 문서세단기
			• 천공기	① 천공기
			• 제본기	① 제본기 ② 스테이플러
				비고: 정격입력이 1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.
			• 복사기	① 복사기(광원의 정격 출력이 1.2 ㎾ 이하인 것을 말한다)
			• 무정전 전원장치	① 무정전 전원 장치 (정격용량이 10 kV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)
			• 디지털TV(스마트 TV, IPTV 등을 말한다)	① 디지털TV(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방송 및 콘텐츠를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)
			• 코팅기	① 코팅기(종이 등을 코팅하는 것을 말한다)
			• 노트북컴퓨터	① 노트북 컴퓨터 ② 태블릿 PC(화면 대각선의 길이가 17 ㎝이상인 것에 한정하며, 화면 대각선의 길이가 17 ㎝이상이며, 음성 통화기능이 있는 경우 태블릿 PC로 본다)
				비고: 교류전원 30V 이하,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.
		조명기기	• 백열등기구	① 백열등기구·전기스탠드 (전자회로가 없는 구조의 것) ② 상데리아 등(1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)
			• 방전램프	① 형광램프 ② 수은램프 ③ 메탈할라이드램프 ④ 나트륨램프 (※ 칼라램프 포함)
			• 그밖의 조명기구	① 체인형 조명기구 ② 충전식휴대전등 ③ 투광조명기구 (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정함) ④ 할로겐등기구 (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정함)

			• 그밖의 램프	① 백열전구 ② LED램프 (모듈) ③ 할로겐전구 (250W이하) ※ 칼라램프 포함
				비고: 방전램프 중 무전극램프, PLS방식의 무전극램프 및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는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에 해당된다.
	생활용품 (29개 품목)	-	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전체 품목	
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(85개 품목)	전기용품 (71개 품목)	-	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(전기용품 & 생활용품) 전체 품목	
	생활용품 (14개 품목)	-		
안전기준준수대상 (23개 품목)	생활용품 (23개 품목)	-	안전기준준수대상 (생활용품) 전체 품목	

try of the ...
try and ...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8-07-05 17:23:04

붙임 4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

구 분	분 야		안전관리대상 품목	
안전인증 대상 (23개 품목)	전기용품 (14개 품목)	전선 및 전원코드	• 전선, 케이블 및 코드류	① 절연전선(공칭단면적이 95mm²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) ② 케이블(공칭단면적이 95mm²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) ③ 코드(공칭단면적이 0.5mm² 이상 6mm²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) ④ 코드세트
			비고: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, 통신 및 데이터 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안전인증대상에서 제외한다.	
		전기기기용 스위치	• 스위치	① 전기기기용 스위치(정격전압 480V이하, 정격전류가 30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) ② 전기설비용 스위치[교류전용 수동식 범용스위치로 정격전압 440V 이하, 정격전류 63A(나사 없는 단자가 달린 스위치의 정격전류는 16A)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] ③ 코드스위치(코드선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스위치로서 250V 이하, 16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) ④ 전자식 스위치(정격전압 250V이하, 정격전류가 16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) ⑤ 리모트콘트롤스위치(정격전압 440V 이하, 정격전류 63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) ⑥ 시간지연스위치(정격전압 440V 이하, 정격전류 63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) ⑦ 조광기(정격전압 250V이하, 정격전류가 16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) ⑧ 제어회로용 스위치(정격전압 480V이하, 정격전류가 30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)
			• 전자개폐기	① 전자개폐기(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)
			비고: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, 기계·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안전인증대상에서 제외한다.	
		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	•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	① X·Y 커패시터(도체간의 전압이 500V 이하이거나 도체와 접지간의 전압이 250V 이하인 것 또는 저항 커패시터가 조합되어 결합되어진 것으로 등가회로의 직렬저항값이 1kΩ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) ② 전파장해억제용 전원필터(도체간 공칭전압이 500V 또는 도체와 접지간의 공칭전압이 250V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) ③ 형광등용 커패시터(용량이 0.1μF 이상이고 무효전력이 2.5kvar 이하인 형광등용인 것에 한정한다)
			비고: 100Hz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.	
		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 부품	•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	① 전기기기용접속기류(전원분배기 포함) ② 상호연결커플러(전기기기 또는 그 밖의 전기장치와 전원용 코드를 접속하기 위한 것으로 정격전압 250V 이하, 정격전류 16A 이하의 접지극이 있거나 접지극이 없는 것에 한정한다) ③ 플러그 및 콘센트 [교류 전용 플러그와 콘센트 또는 이동형 콘센트로 정격전류가 32A(나사 없는 단자 고정형콘센트의 정격전류는 20A) 이하인 접지핀을 장착한 것 또는 접지극이 없는 것으로서 옥내용 또는 옥외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정한다] ④ 케이블릴(단상 정격전압 250V 정격전류 16A 이하, 삼상 정격전압 440V 정격전류 16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)
			비고: 방폭형(防爆型)인 것은 안전인증대상에서 제외한다.	
		전기용품 보호용 부품	• 퓨즈	① 퓨즈(정격전류가 20mA 이상 10A 이하인 것으로 소형퓨즈인 것에 한정한다) ② 온도퓨즈(동작온도가 80 ℃ 초과 280 ℃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)
			• 차단기	① 기기보호용 차단기(정격전류가 125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) ② 배선용차단기(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) ③ 누전차단기(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으로 누전보호전용 또는 누전·과부하보호·단락겸용보호 겸용인 것에 한정한다)
			비고: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한다.	
		전기기기	• 전기침대	① 전기침대
			•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,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	① 전기방석 ② 전기찜질기 ③ 발보온기
				비고: 교류전원 30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.
			• 전기충전기	① 전기충전기
				비고: 교류전원 250V 이하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한다.
			• 전열기구	① 전열보드
			• 유체펌프	① 유체펌프 ② 전기온수펌프
				비고: 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, 사용액체의 온도가 90℃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, 진공펌프, 오일펌프,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안전인증대상에서 제외한다.
			• 전기욕조	① 소용돌이욕조(독립적으로 사용가능한 욕조기포발생기를 포함한다) ② 반신·전신욕조 ③ 발욕조
		정보 통신·사무기기	• 직류전원장치	①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(충전 거치대를 포함한다) 비고: 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. 기계·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안전인증대상에서 제외한다.
		조명기기	• 램프홀더	① 형광램프 홀더 ② 에디슨 나사형 홀더 ③ 기타 램프 홀더 ④ 형광등용 스타터 홀더
			• 일반조명기구	① 형광등기구 ② PLS조명기구 ③ 백열등기구·전기스탠드(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의 것) ④ LED등기구 ⑤ 할로겐등기구(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램프당 150W 이하인 것에 한정함) ⑥ 고압방전등기구(램프당 150W 이하인 것에 한정함) ⑦ 투광조명기구(구동장치가 있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정함)
			•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	① 램프용 자기식안정기(정격입력이 1,000W 이하인 것을 한정한다) ② 램프용 전자식안정기(정격입력이 1,000W 이하인 것을 한정한다) ③ 네온변압기 ④ 조명기구용컨버터(LED 전원공급장치포함)
			• 안정기 내장형램프	① 안정기내장형 LED램프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8-07-05 17:23:04

	생활용품 (9개 품목)	화학	•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(트레드고무를 포함)	①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② 타이어 재생용 트레드고무
		생활용품	• 가스라이터	① 가스라이터
			• 비비탄 총	① 청소년용 비비탄 총 ② 성인용 비비탄 총
		기계	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승강기 부품 • 조속기(調速機) • 비상 정지장치 • 완충기 • 상승과속 방지장치용 브레이크 • 승강장 문 잠금장치 •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 방지장치	① 조속기(調速機) ② 비상 정지장치 ③ 완충기 ④ 상승과속 방지장치용 브레이크 ⑤ 승강장 문 잠금장치 ⑥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 방지장치
안전확인 대상 (12개 품목)	전기용품 (12개 품목)	전기기기용 스위치	• 전기기기용 제어소자	① 온도조절기 ② 온도과승방지장치 ③ 자동압력 스위치 ④ 타이머 및 타임스위치 ⑤ 전기구동 모터 기동릴레이 ⑥ 에너지 레귤레이터
			비고: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하며, 기계·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안전확인대상에서 제외한다.	
		전기기기	• 컴프레서compressor)	① 컴프레서(compressor)
			• 전기온수매트	① 전기온수매트 ② 전기온수침대
			• 폐열 회수 환기장치	① 폐열 회수 환기장치
			• 에너지 저장장치	① 에너지 저장장치(정격용량이 100kVAh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)
			• 기포발생기기	① 기포발생기
			• 수도 동결 방지기	① 수도 동결 방지기
			• 전기세척기	**① 초음파세척기**
			• 전기정수기	① 전기정수기 ② 전기이온수기
			• 전기헬스기구	① 전기헬스기구

			•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	① 물수건포장기 ② 물수건마는기기
			•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	①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
			• 전지(충전지만 해당한다)	① 전지
				비고: 1. 일상생활에서 전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되는 단전지는 전지로 간주하며, 안전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2. 교류전원 30V 이하, 직류 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. 3. 기계·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안전확인대상에서 제외한다.
			• 방전램프	**① 무전극램프**
			• 그밖의 조명기구	**① PLS방식의 무전극램프 및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**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8-07-05 17:23:04